청 양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보

선람	기관의 장

제201호 2020. 5. 15.



회람							

발행 청 양 군 (편집 기획감사실 ☎041-940-2051)

조 례

○ 제2454호 청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제2455호 청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 제2456호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청양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20

○ 제2457호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1

○ 제2458호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35

○ 제2459호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37

○ 제2460호 청양군 지역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 40

○ 제2461호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35

○ 제2462호 청양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 37

○ 제2463호 청양군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0

규 칙

○ 제1257호 청양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청양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43

○ 제1258호 청양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 51

○ 제1259호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3

○ 제1260호 청양군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1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5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454호

청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한다.

제9조 중 “의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5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455호

청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속 공무원

나. 군의회 의원

다. 「청양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라. 군이 출연한 법인의 임직원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포상금"이란 신고를 통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2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신고기한)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공개하여서는”을 “공개해서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위를 하여서는”을 “행위를 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10조 중 “진술”을 “진술·증언,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15조 중 “지급제외”를 “지급 제외”로 하고,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청양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2020년　5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456호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청양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제1조(「청양군 포상 조례」) 청양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을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로 한다.

제2조(「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감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를 “감염병에 걸린”으로 한다.

제3조(「청양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청양군읍·면개발자문위원

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회무를 통리”를 “사무를 총괄”로 한다.

제4조(「청양군리개발위원회 조례」) 청양군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회무를 통리”를 “사무를 총괄”로, “되다”를 “된다”로 한다.

제5조(「청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학·사계 및 관련학·협회”를 “관련 학·협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5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457호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망일 현재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를 봉안당에 안치할 때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추모공원의 최초 사용계약 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안, 분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추모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봉안, 분묘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추모공원의 사용계약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 한다.

1.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기간이 15년이 도래하여 계속해서 15년을 더 사용하려는 경우: 종전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
2. 제1호에 따른 30년의 사용기간 종료 후 계속해서 30년을 더 사용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

[별표 2]

묘지 및 봉안당 사용료

(단위 : 원)

종 별	구 분	사 용 료	비 고
묘 지	㎡ 당	70,000원	매장시 1회에 한함
봉 안 당	개인단 1위	100,000원	안치시 1회에 한함
	부부단 1위	200,000원	

묘지 및 봉안당 관리비

(단위 : 원)

종 별	구 분	사 용 료	비 고
묘 지	㎡ 당	80,000원	최초계약시와 연장계약시 납부
봉 안 당	개인단 1위	100,000원	최초계약시와 연장계약시 납부
	부부단 1위	200,000원	

묘지 및 봉안당 사용료 환급기준

연차별	환급률	연차별	환급률	연차별	환급률
6개월 이내	75%	5년초과~6년	45%	11년초과~12년	15%
6개월초과~1년	70%	6년초과~7년	40%	12년초과~13년	12%
1년초과~2년	65%	7년초과~8년	35%	13년초과~14년	10%
2년초과~3년	60%	8년초과~9년	30%	14년초과~15년	7%
3년초과~4년	55%	9년초과~10년	25%	15년초과	5%
4년초과~5년	50%	10년초과~11년	20%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5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458호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군내 거주한 미혼자로서 결혼 후 지원 신청일 현재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거주하는 사람(단, 배우자의 결혼장려금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지원하지 아니하며, 배우자가 동시에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부부 중 한사람에게만 지원)

제4조제7항 중 “결혼 전 1년 이상 군 내 거주한 미혼 남녀로서 결혼 후 계속하여 군 내 거주하는 부부”를 “제3조제6호에 해당되는 사람”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최초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전액 환수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설 2018.01.24. 개정 2018.09.20., 2019.1.30., 2020.5.1.>

청양군 인구증가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제4조 관련)

시책명	지원내용	적용기준	지원시기	지원부서
전입 주민 지원	○ 전입 주민 축하금 - 청양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시 : 3만원** • **1년이상 거주한 자 : 20만원** (최초 1회에 한함)	○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 내 거주 하기 위해 전입하는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지원과
	○ 쓰레기 종량제 봉투 - 세대원 1인당 500ℓ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전입신고 시	환경보호과
전입 대학생 지원	○ 전입 대학생 축하금 - 청양사랑상품권 지급: 10만원 (최초 1회에 한함)	○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 내 전입하여 군 내 대학에 재학.휴학한 대학생	전입신고 시	행정지원과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청양사랑상품권 지급: **30만원** **(전입후 6개월마다 유지시 10만원, 최대 3회)**	○ **전입신고후 계속하여 군 내에 주소를 둔 대학생** ※ 거주 및 재학여부 확인 후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지원과
	○ 기숙사비 지원금 - 2 학기분 지원 - 1학기당 500,000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급 (전입축하금, 생활안정지원금, 다른 기관에서 기숙사비를 지원 받은 대학생은 차감지급)	○ 기숙사를 이용하며 당해 연도 연말까지 군 내에 주소를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 단, 당해연도 1학기분만 기숙사비 지원받은 학생은 이후 1 학기분 기숙사비 지급 가능	다음 해 2월말	미래전략과
	○ 아르바이트, 인턴으로 군에서 우선 채용 (최초 1회에 한함)	○ 아르바이트 - 군 내 거주 6개월 이상 ○ 인턴 - 군 내 거주 1년 6개월 이상	대학생 방학기간	행정지원과
청양시네마 영화관람권 지원	○ **전입주민.대학생 청양시네마 영화관람권 1인당 2매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 내 거주 하기 위해 전입하는 경우**	**전입신고 시**	문화체육관광과
결혼 장려금 지원	○ 결혼장려금 - 5,000,000원 한도 • 혼인관계사실 및 주민등록 확인 후 1,000,000원 지급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0,000원 지급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2,000,000원 지급 ※ 매회 지급액의 50% 이내에서 청양사랑상품권 지급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군내 거주한 미혼자로서 결혼 후 지원신청일 현재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거주하는 사람(단, 배우자의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있을 경우 지원하지 아니하며, 배우자가 동시에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부부 중 한사람에게만 지원) ※ 최초 지원 신청시 별지 제4호서식 첨부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미래전략과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2020년　5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459호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고시한 지역

을 말한다.

2. “주민감시요원”이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군수가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15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주민지원기금 재원을 세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등) 군수가 영 제27조제1항 관련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별표3의 그 밖의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시설 운영비 등 지원사업

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3. 건강검진비 지원

4.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선진지 견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주민지원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지원기금을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양군 부군수가 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

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과장, 환경보호과장, 사회적경제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청양군의회 의원

나. 교수, 변호사, 언론인, 사회단체대표 등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환경보호과장
2. 기금출납원: 주민지원기금 업무 팀장

제14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에 대하여 청양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단가를 적용하여 월 단위로 수당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지역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2020년　5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460호

청양군 지역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를 청양군에 안정적으로 공급·유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 먹거리”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된 것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품질 좋은 지역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먹거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인 유통·공급 및 품질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 먹거리 전략 수립 등)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인 유통·공급과 지역 먹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양군 지역 먹거리 전략(이하 “지역 먹거리 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취약 계층에 대한 지역 먹거리의 지원 계획
2. 지역 먹거리의 안전성, 신선도 등 품질 향상
3. 지역 먹거리의 우선 공급 체계 구축
4. 지역 먹거리 관련 민·관 협력 체계 및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역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청양군 지역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지역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군민의 지역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및 영양상태
2. 지역 먹거리 생산·유통체계 및 지역 먹거리 안전성
3.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푸드플랜 활성화
2. 직매장·가공센터·레스토랑 운영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판로 확대
3. 농업인·소비자의 교육·연구·컨설팅 등 역량강화
4. 농산물·특산물 연구개발, 가공지원 및 소비촉진 등
5.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6. 학교급식·공공급식 등 활성화
7. 그 밖에 군수가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양군 지역 먹거리 위원회)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청양군 지역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 먹거리 전략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 먹거리 전략의 평가

3.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 참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1. 지역 먹거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중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관계기관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다. 지역 먹거리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

라.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모집된 사람

마. 그 밖에 지역 먹거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지정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 먹거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2020년　5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461호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5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462호

청양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5만원”을 “6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5월　15일

청양군 조례 제2463호

청양군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타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 이외의 산업에서 종사하다가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의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만5년의 범위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 이외의 산업에서 종사하다가 군으로의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만5년의 범위에서 전원생활을 하는 자를 말한다."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를 “경우”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하 “재촌 비농어업인”이라 한다) 중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제1호 중 “귀농·귀촌”을 “귀농인·귀촌인”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중 “조기정착”을 “조기 정착”으로, “제공하며”를 “제공하여야 하며”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2항 중 “때”를 “경우”로,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을 “(지원의

취소)”로 하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가”를 “사람이”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제2항 후단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청양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2020년　5월　15일

청양군 규칙 제1257호

청양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청양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제1조(「청양군 자체감사 규칙」) 청양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4호 중 “문서부책에”를 “문서에”로 한다.

제2조(「청양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청양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회무를 통리”를 “사무를 총괄”로 한다.

제3조(「청양군 재무회계 규칙」)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항 중 “해득”을 “이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2020년　5월　15일

청양군 규칙 제1258호

청양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양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을 “청양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9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1

과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누설하여”를 “누설해”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1에”를 “어느 하나에”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의 규정에 의하여”를 “등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8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를 “이미”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위 반 행 위	지급액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	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남녀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 대여· 배포 행위	5만원
법 제28조의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세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2020년　5월　15일

청양군 규칙 제1259호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계약조건 2의 “매 15년마다”를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마다”로 한다.

별표 4 제2조 관리비 란 중 “15년”을 “ 30년”으로 하고, 제7조 중 “15”를 “30”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청양군추모공원 사용계약증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1. 계약구분 : 묘지, 봉안당

2. 계약장소 :

3. 계약기간 :

4. 계약대상 :

주 소		
성 명	( )	( )
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5. 계약조건 : 이면기재 사항과 같음.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묘지(봉안당)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청 양 군 수

계 약 조 건

1. 전면에 개재한 사용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내에 재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사용계약을 받지 않으면「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납골합니다.

2. 관리비는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망후 기 계약한 장소에 매장하지 않거나 이장해올 유해를 3년이내 매장하지 않을때 사용계약이 취소되며 기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치 않습니다.

4. 묘지나 봉안당의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5. 다음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법률」,「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위반한 경우

   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시설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중인 분묘는 관리자의 승낙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별표 4]

계 약 서

제1조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양군수를 “갑” 이라 하고 묘지사용신청인을 “을”이라 칭하며 묘지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구 분	단 지	단	번	면 적	비 고

제2조(계약금)

구 분(합계)	사 용 료	관 리 비 (30년)	기 타

제3조(사용시의 제한) “을” 은 상기묘역이나 봉안당은 묘지나 봉안당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갑” 이 지정한 시설물등 이외의 어떠한 시설도 설치할 수 없다.

제4조(사용권) “을” 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묘지사용권을 취득한다. “갑” 은 “을“ 에게 별도 서식 계약증을 교부한다.

제5조(관리비) ① “을” 은 묘지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계약 체결시 “갑” 에게 선납한다.

② 관리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시는 “을” 은 “갑” 이 고시한 관리비를 “갑” 에게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비 미납시의 처리) “을” 이 관리기간이 경과하여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갑” 은 묘지관리의 일체 책임을지지 않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무연고 분묘로 간주 처리한다.

제7조(재계약) 사용기간 30년 경과 후 “갑” 과 “을” 은 재사용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분묘의 규격) “갑”은 분묘를 설치함에 있어「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이 외의 분묘는 설치할 수 없다.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을” 은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매장통보) “을” 은 계약한 묘지내에 분묘를 설치코자 할 때에는 48시간 이전에 “갑”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작업) “갑” 은 “을” 로부터 제10조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역, 매장작업등은 “갑” 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다만, 소요 비용은 “을” 이 부담한다.

제12조(설치거부) “갑” 은 “을” 이 소정의 절차를 필하지 아니하고 매장 및 합장을 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묘역관리) “갑” 은 “을” 이 묘지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선량한 관리자로서 묘역을 관리한다.

제14조(석물관리) 석물대금은 “을” 이 매장시 납부하고 석물의 설치는 “갑” 의 책임하에 설치하되 석물의 규격은「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5조(관리자의 책임) “갑” 은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분묘 및 시설물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원활한 묘지관리를 위하여 “을” 은 사용자로서 사용권의 승계 또는 주소변경사항에 대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통지나 직접 신고하여야 하며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제17조(해약) “갑” 은 “을” 이 조례 제15조에 해당되거나 다음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을” 이 기 납부한 묘지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않으며 “을” 이 기 취득한 사용권도 자동 상실된다.

1. 타 묘지로 이장하였을 때
2. 기타 “갑” 과 체결한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8조(기타) 본 계약은 현행 관계법령,「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내에서 유효하며 개정 시에는 개정된 것에 따른다.

제19조(계약서 보관) 후일을 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과 “을” 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청 양 군 수 :

“을”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청양군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5월　15일

청양군 규칙 제1260호

청양군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양군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례 제10조의 재촌 비농어업인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청양군귀농귀촌협의회장, 농촌지도자청양군연합회장, 생활개선청양군연합회장, 청양농업협동조합 상무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제10조, 제11조, 제12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제3조”를 “제4조”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현지여건”을 “현지 여건”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2항”을 “제1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가목 전단에 “귀농 전입시점에서 만5년 이내이며,”을 후단에 “또는 영농교육을 최소 30시간 이상 이수한 재촌 비농어업인”을 각각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 다목1) 및 같은 조 제2호 다목1) 중 “주민등록등본·초본”을 각각 “주민등록 등본·초본”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